●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272	•					삼척시		유사단체 평균		
재정	운영	결 과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중감 (C=A-B)
	세	입	예	산	4,644	4,643	1	5,043	4,858	185
세시구ㅁ	세	출	예	산	4,644	4,643	1	5,043	4,858	185
예산규모	중 재	기 정	지 계	방 획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지 재	역 정	통통	합 계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재	정자립	도[딩	[초]	20.47	18.01	2.46	19.52	18.34	1.18
재정여건	재	정자주	도[딩	[초]	70.08	67.76	2.32	63.44	62.69	0.75
	통	합재정	수지[덕	당초]	-51	-79	28	42	36	6
	성	인 :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주	민 참	여 &	∥ 산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성	과 ;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게 각 ㅇ ᅌ 게 히	재 개	정 운	용 성 요	} 황 서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재정운용계획	예 운	산 편 / 영	성 기 (상	준 별 황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보는 반	통교부서 영	ll 자체 현	노력 황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지 감	액	교 부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지 인	방 <u>3</u> 센 티	교 부 브 현		항목별	공시내용	- 참조			

▶ 유사단체:시-(4)(경기 동두천시, 여주시, 강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경북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사천시, 밀양시)

②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삼척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4,436	415,887	14,368	27,798	6,38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90,785	444,881	456,823	464,290	464,43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vii ⇔i ⊸ii ⇔i	2012	2	2013	3	2014	1	2015	5	2016	5
세입재원	금액	비중								
합 계	364,230	100.00	397,099	100.00	411,009	100.00	413,590	100.00	415,887	100.00
지 방 세	17,985	4.94	18,286	4.60	20,252	4.93	22,469	5.43	24,278	5.84
세외수입	41,153	11.30	49,539	12.48	50,727	12.34	39,528	9.56	41,567	9.99
지방교부세	195,463	53.66	196,881	49.58	207,501	50.49	199,741	48.29	200,318	48.17
조정교부금 등	5,000	1.37	5,000	1.26	5,000	1.22	6,000	1.45	6,000	1.44
보조금	104,628	28.73	127,393	32.08	110,551	26.90	125,352	30.31	119,429	28.72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8,000	1.93	5,000	1.2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16,978	4.13	12,500	3.02	19,296	4.6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삼척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 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4,436	415,887	14,368	27,798	6,38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90,785	444,881	456,823	464,290	464,43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n z H Al	2012		2013		2014		2015	5	2016	
세출분야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4,230	100	397,099	100.00	411,009	100.00	413,590	100.00	415,887	100.00
일반공공행정	21,128	5.80	21,499	5.41	18,980	4.62	18,391	4.45	19,173	4.61
공공질서 및 안전	11,983	3.29	13,819	3.48	12,929	3.15	4,192	1.01	8,347	2.01
교육	6,160	1.69	12,381	3.12	7,265	1.77	7,185	1.74	6,024	1.45
문화 및 관광	24,288	6.67	32,412	8.16	33,550	8.16	26,563	6.42	44,014	10.58
환 경 보 호	24,939	6.85	37,041	9.33	35,326	8.59	54,165	13.10	48,096	11.56
사 회 복 지	61,943	17.01	69,627	17.53	76,069	18.51	78,114	18.89	83,086	19.98
보 건	5,038	1.38	4,865	1.23	5,199	1.26	6,569	1.59	6,190	1.49
농림해양수산	51,805	14.22	55,570	13.99	60,913	14.82	54,538	13.19	54,459	13.09
산업·중소기업	27,089	7.44	11,160	2.81	27,135	6.60	31,162	7.53	13,077	3.14
수송 및 교통	20,698	5.68	20,559	5.18	19,277	4.69	13,346	3.23	14,379	3.46
국토 및 지역개발	43,733	12.01	49,745	12.53	39,987	9.73	43,708	10.57	36,031	8.66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 비 비	4,840	1.33	5,745	1.45	7,868	1.91	6,192	1.50	10,475	2.52
기 타	60,585	16.63	62,676	15.78	66,512	16.18	69,464	16.80	72,536	17.4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백만원, %)

구	·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28,839	534,461	544,030	561,044	573,740	2,742,114	2.10
자	체 수 입	77,267	81,046	84,311	87,114	89,984	419,722	3.90
의	존 수 입	394,955	413,740	419,093	432,798	442,001	2,102,587	2.90
지	방 채	5,000	0	0	0	0	5,000	0.00
I	전수입 등 내부거래	1 51617	39,674	40,626	41,132	41,754	214,803	-5.20
세	출	528,839	534,461	544,030	561,044	573,740	2,742,114	2.10
경	상 지 출	113,103	101,242	104,231	106,497	107,783	532,856	-1.20
사	업 수 요	415,736	433,218	439,799	454,548	465,956	2,209,257	2.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삼척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81,439	482,610	1,171	0.24
삼척시(당초)	464,290	464,436	146	0.03
출자기관	4,461	4,370	-91	-2.04
출연기관	12,688	13,804	1,116	8.80

▶ 삼척시 2015년, 2016년 예산 : 당초예산 기준

출자기관 - 2015년 예산 : 최종예산 기준, - 2016년 예산 : 당초예산 기준 출연기관 - 2015년 예산 : 최종예산 기준, - 2016년 예산 : 당초예산 기준

▶ 출자기관(1개) :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 출연기관(3개) : 삼척향토장학재단, 삼척시도계장학재단, 원덕향토장학재단

③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 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47%입니다.

(단위: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0.47	415,887	85,140	325,746	5,000	0
(15.83)	(415,887)	(65,845)			(22,368)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16.24	17.08	21.40	18.01 (14.99)	20.47 (15.83)
최종예산	15.95	24.15	20.95	21.48 (15.35)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당초]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0%입니다.

(단위: 백만원, %)

재정자주도 (B <i>J</i> 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0.08	415,887	291,458	119,429	5,000	0
(65.44)	(415,887)	(272,162)			(19,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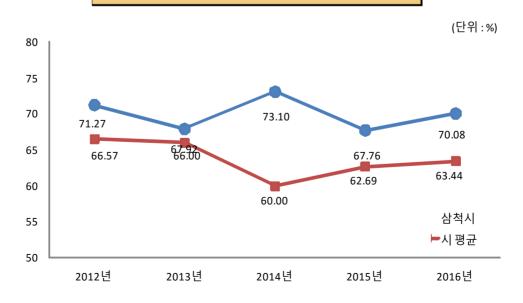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71.27	67.92	73.10	67.76	70.08
034 11 2	71.27 07.72 70.10		(64.74)	(65.44)	
최종예산	70.31	71.70	73.68	68.90	
먹이게건 	70.51	71.70	75.00	(62.68)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백만원)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통합재정	수지 1 [
회계별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규모	스기 1	
총 계	419,396	432,926	112	361	250	8,722	433,176	-13,780	-5,058
일반회계	391,591	405,739	0	0	0	7,000	405,739	-14,149	-7,149
기타 특별회계	21,886	12,430	20	61	41	1,472	12,471	9,415	10,887
공기업 특별회계	5,806	14,368	0	0	0	250	14,368	-8,562	-8,312
기 금	113	389	92	300	209	0	598	-485	-485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5,362	-12,396	-15,120	-19,489	-13,780
통합재정수지 2	343	2,283	3,885	-7,906	-5,058

■ 2016년도 당초예산기준 하수로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지방채 50억원 발행에 따라 통합 재정수지 적자 발생함.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 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삼척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개,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8	27,761
여성정책추진사업	9	3,04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	23,08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1,624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삼척시는 모델안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주민의견 설문조사 결과)	모델안 1
464,436	351,890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2011.10.28 조례제정) - 예산편성 설문조사 실시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운영계획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수립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 원 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지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명, 백만원)

분야별	참여수	반영예산액	내 용
총 액	891	351,890	
공공질서 및 안전	65	8,347	·재해위험지구,수해상습지역 정비 강구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체계 구축, 강화 등
교육분야	92	6,024	·학교시설 개선등 교육환경 개선지원 ·평생학습 지원을 통한 평생학습 시스템 마련 등
국토 및 지역개발	155	36,495	·오지 및 취약지역 개선을 통한 낙후마을 재개발 사업 추진 ·도시환경 개선 및 상하수도 건설, 운영 필요 등
농림해양 수산 등	170	54,458	·지역특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특화작목의 특성화 필요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 보전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어민소득 증대 필요
문화 및 관광	108	44,014	·신규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 개최 확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 홍보 컨텐츠개발 등
보건분야	9	6,190	·방역 및 전염병 예방, 건강증진 사업 등
사회복지	136	85,874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노인일자리등) 지원 필요 ·저소득층, 장애인 등 기초생활안정 지원 필요 등
산업· 중소기업	64	33,799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확대로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고용촉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수송 및 교통	45	14,664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보
환경보호	47	62,025	·페기물 처리시설 조성 및 재활용사업, 대기오염 및 생활 공해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 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삼척 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성과계획			예산액			
실국명	전략	정책사	업목표	단위	예산액	전년도	비교
	목표수	개수	지표수	사업수	게단기	예산액	증감
계	0	0	0	0	443,685	434,352	9,333
기획감사실	0	0	0	0	12,259	7,988	4,272
문화공보실	0	0	0	0	21,365	12,519	8,846
미래전략국	0	0	0	0	46,130	51,225	-5,094
자치행정국	0	0	0	0	177,365	164,384	12,981
경제건설국	0	0	0	0	114,543	113,148	1,395
농업기술센터	0	0	0	0	5,416	7,678	-2,262
보건소	0	0	0	0	7,238	7,750	-512
기타 사업소	0	0	0	0	48,306	58,466	-10,160
의회사무과	0	0	0	0	938	1,033	-95
읍면동사무소	0	0	0	0	10,124	10,160	-3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 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0.47	70.08	19.98	30.37	49.75	83.87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전(2013년 이전) 기준 금액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u>황</u> -	곡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단체장	58	58	0
업무추진비	부단체장	41	41	0
	추진 추진비	274	261	-13
	의정운영 공통경비	45	45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5	45	0
	의원국외여비	25	25	0
지방1	보조금	30,305	13,102	-17,203
· ·	장반장 보상금	950	945	-5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73	1,250	-23
공무원 '	일·숙직비	0	0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출 효율화)	(세입 확충)
-7,541	-3,018

-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ए ७ ४ ५	2015년	2016년	
계	3,464	-7,541	
인건비 절감	0	68	
지방의회경비 절감	48	42	
업무추진비 절감	35	5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39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991	-9,921	
지방청사 관리·운영	2,390	1,815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693	-3,018
지방세 징수율 제고	386	-890
지방세 체납액 축소	-70	-1,479
경상세외수입 확충	1,438	46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75	-683
탄력세율 적용	-482	-427
지방세 감면액 축소	-4	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5년에 우리 삼척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 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 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5년에 우리 삼척시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중액금액
합 계		
	<i>헤 당 없 음</i>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 가 증액된 경우